

제거가 조화로운 개발과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하며, 보다 넓은 국제적 협력, 특히 동아시아내의 협력에 대한 촉매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세계화 도전에 대처하는데 있어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능력배양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 간의 경제개발의 상이한 단계와 신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에게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성, 특히 무엇보다도 국내 능력,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신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당사국들간 경제협력에 대한 참여 증가와 수출 확대를 촉진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총 칙

제 1.1 조 목 적

이 기본협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당사국들 간 경제·무역 및 투자 협력의 강화 및 증진
- 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점진적인 자유화 및 증진과 아울러 투명하고, 자유롭고, 원활한 투자제도의 창설
- 다. 새로운 분야의 모색과 더욱 긴밀한 경제 협력 및 통합을 위한 적절한 조치의 개발
- 라. 신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더욱 효과적인 경제통합의 촉진과 당사국들 간 개발 격차의 해소, 그리고
- 마. 당사국들 간의 경제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협력 틀의 설치

제 1.2 조 정 의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기본협정의 목적상,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말한다.

“대한민국-AEM”라 함은 대한민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경제장관들을 말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라 함은 브루나이다루살람·캄보디아왕국·인도네시아공화국·라오인민민주공화국·말레이시아·미얀마연방·필리핀공화국·싱가포르공화국·타이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말한다.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라 함은 이 기본협정과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그 밖의 관련 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말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이라 함은 브루나이다루살람·캄보디아왕국·인도네시아공화국·라오인민민주공화국·말레이시아·미얀마연방·필리핀공화국·싱가포르공화국·타이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라 함은 브루나이다루살람·캄보디아왕국·인도네시아공화국·라오인민민주공화국·말레이시아·미얀마연방·필리핀공화국·싱가포르공화국·타이왕국 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한다.

“기본협정”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이 기본협정을 말한다.

“GATS”라 함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일부로서 주해 및 보충적 규정을 포함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라 함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일부로서 주해 및 보충적 규정을 포함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이행위원회”라 함은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이행위원회를 말한다.

“신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이라 함은 캄보디아왕국·라오인민민주공화국·미얀마연방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한다.

“일반품목군”이라 함은 최혜국대우 관세율이 이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1부속서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감축되고 철폐되는 품목의 목록을 말한다.

“당사국들”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을 집합적으로 말한다.

“당사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라 함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함은 1994년 4월 15일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및 그에 따라 협상된 그 밖의 협정을 말한다.

제 1.3 조 포괄적 경제관계를 위한 조치

당사국들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와 합치하게 다음

을 통하여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며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증진한다.

가. 실질적으로 모든 상품무역에 있어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점진적인 철폐

나. 상당한 분야별 대상 범위에서 서비스 무역의 점진적인 자유화

다. 당사국들 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증진하는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투자 제도의 설립

라.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간의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문과 그에 첨부된 핵심요소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에 대하여 특별 및 차등 대우와 신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에 대한 추가적인 유연성의 부여

마. 유연성이 상호주의와 상호 혜택의 원칙에 기초하여 협상되고 상호 합의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상품·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의 민감 부문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 협상에서 당사국들에 대한 이러한 유연성의 부여

바. 효과적인 무역 및 투자 촉진 조치의 실시

사. 당사국들 간 무역 및 투자 연계의 심화를 보완할 새로운 분야로의 경제동반자 관계의 확대를 위한 수단 및 방법의 모색과 합의될 수 있는 분야에서의 당사국들 간 경제협력의 확대. 그리고

아. 이 기본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목적으로 한 적절한 절차 및 제도의 설립

제 1.4 조

법적 적용범위 및 그밖의 협정과의 관계

1. 다음 협정은 각각의 발효일에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법적 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가. 이 기본협정 (경제협력에 관한 부속서를 포함한다)

나. 제2.1조에 규정된 이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다. 제2.2조에 따라 체결될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라. 제2.3조에 따라 체결될 투자에 관한 협정
마. 제5.1조에 규정된 이 기본협정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 그리고

사.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의 맥락에서 당사국들이
이 컨센서스로 상호 합의하고 체결할 수 있는 그밖의 협정

2. 이 기본협정에 달리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기본협정 또는 그에
따라 취하여진 어떠한 행위도 당사국이 당사자인 기준의 협정상의 그 당사
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무효화하지 아니한다.

3. 이 기본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 상
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및/또는 경제협력의 그밖의 분야와 관련하여 양자
또는 복수국간 협정을 다른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및/또는 대한민국과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기본협정의 규정은 이러한 양자 또는
복수국간 협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장 자유화

제 2.1 조 상품무역

1. 당사국들은 이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상의 일반품목군
에 관한 규정·양허표 및 프로그램에 따라, 당사국들 간의 실질적으로 모든
상품무역에 대하여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상거래규정(필요한 경우,
1994년도 GATT 제24조 제8항 나호에서 허용된 것은 제외한다)을 점진적
으로 축소하고 철폐한다.

2. 이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
되지 아니한다.